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

▷ 계약목적

1. 이용계약을 통해 기관과 서비스제공자, 이용 대상자와 보호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준수하며 이용 대상자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낮 동안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증진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 계약기간

1.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2조 1항에 명시토록 한다.
2. 장기요양 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 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4.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그 여부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 산정지침에 따른 법정 본인 일부 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요양보험수가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비급여 항목(식비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등)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3. 비급여 항목과 비용은 아래와 같다.

식사비 1일/2회 (점심, 저녁)	간식비 1일/2회 (오전, 오후)	1일당 식사+간식비용
2,500 * 2 = 5,000원	500 * 2 = 1,000원	6,000원

4.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5.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 증액	2,262,000	2,028,000	1,700,640	1,567,440	1,345,320	

6. 본인부담율에 따른 1일당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본인부담율	일반 (15%)	경감 (9%)	경감 (6%)
2등급	7,194	4,316	2,878
3등급	6,641	3,984	2,656
4등급	6,416	3,849	2,566
5등급	6,186	3,712	2,474
인지지원등급	6,186	3,712	2,474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본인부담율	일반 (15%)	경감 (9%)	경감 (6%)
2등급	8,949	5,369	3,580
3등급	8,262	4,957	3,305
4등급	8,037	4,822	3,215
5등급	7,808	4,685	3,123
인지지원등급	7,808	4,685	3,123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본인부담율	일반 (15%)	경감 (9%)	경감 (6%)
2등급	9,858	5,915	3,943
3등급	9,108	5,465	3,643
4등급	8,879	5,327	3,551
5등급	8,654	5,192	3,461
인지지원등급	7,808	4,685	3,123

7. 18시~22시에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가 가산되며, 일요일,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됨에 따라 같은 일수를 이용하더라도 매월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
8.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관은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평일(월~금)에 한하여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입소 비용은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9.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를 정산하여 그 내용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말일 ~ 다음 달 5일 이내에 SMS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통보한다.
10.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관의 계좌로 말일 ~ 익월 10일 중으로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로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 또는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장기요양급여 종결 또는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활동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활동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환경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 등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받고 건의 사항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종결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상태, 병력, 인정서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급여비용 부담 의무
3. 주소지,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종류 변경, 등급변경, 인정 기간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기관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루 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심각한 성격·정서적 문제나 건강상 이유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